

아음장생포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모집 공고

「울산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연번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모집인원	수 당	협약기간
		요일	시간			
1	어반스케치	화	10:00~12:00	1명	40,000원 /시간당	2026.10.1. ~ 12.31.
2	라인댄스	화, 목	15:00~16:00	1명		

※ 월 강사수당 지출대비 월 수강료 수입 기준 미 충족 프로그램은 미개설로 인해 강사선발이
최소될 수 있음. (수강료 기준: 월 수강료/월 강사수당의 백분율 70% 이상)

2.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26. 8. 25.(화) ~ 9. 7.(월) 09:00 ~ 18:00 ※ 주말제외, 기한엄수
- 장 소 : 아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
- 방 법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지원자가 직접 방문 접수

3. 지원자격

-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기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4.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필요 시)을 통하여 선정 후 개별 통보

5. 심의기준

-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및 경력 유무
-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강의 경험 유무
-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적합 유무 등

6. 제출서류

- 강사 지원신청서 및 이력서 1부 (사진부착)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강의계획서 1부
 - ※ 강사지원서에 기재한 증명자료 미제출 시, 경력 및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기타문의 :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226-2612)

202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장생포동장

【붙임2】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자택)			휴 대 폰		
지원분야 (강의분야)		유급		지원사유	
		자원봉사			
E-mail			최종학력		
자격 · 면허 (사본 첨부)	자격 · 면허명	발행처	자격 · 면허명	발행처	
년 월 일	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각1부, 반명함 사진 1매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장생포동장 귀하					

【붙임3】

이 력 서

사 진 부 착 (3cm × 4cm)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현 주 소	(-)					
	연 락 처	자택		핸드폰		E - 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학 과	졸업년도	비고
	년 월 日 년 월	고등학교	(주/야)		
	년 월 日 년 월	전문대학	(주/야)		
	년 월 日 년 월	대학교	(주/야)		
	년 월 日 년 월	대학원	(주/야)		
	년 월 日 년 월	기타 :	(주/야)		

관 련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직 장 명	담 당 업 무	비고
	년 월 日 년 월			
	년 월 日 년 월			
	년 월 日 년 월			
	년 월 日 년 월			
	년 월 日 년 월			

자 격 증 / 수료 증	종류 및 등급	취득일	발행처	수 상 현 황	수상종류	수상일자	수여기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붙임4】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담 당 업 무		근 무 부 서
근 무 년 한					
퇴 직 사 유					
용 도					

확인담당자 :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기관장(직인)

【붙임5】

강 의 계 획 서 (서식변경 가능)

프로그램명		장 소	
강 의 기 간		강의시간	
강 사 명		연 락 처	

월별	주별	수업횟수	강 의 내 용	비 고
10	1주			
	2주			
	3주			
	4주			
11	1주			
	2주			
	3주			
	4주			
12	1주			
	2주			
	3주			
	4주			

【붙임6】

강 의 협 약 서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장생포동장(이하 “동장”)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이하 “강사”)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동장”과 “강사”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동장의 의무)

동장은 양질의 강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제2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양질의 강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프로그램명)

- ① 강사는 동장이 개설하는 _____ 강의를 담당한다.
- ② 담당 프로그램의 변경은 동장, 강사의 합의에 의하여, 이에 따른 협약서의 개정이 없으면 동장이 발간하는 프로그램 운영 안내 홍보물의 내용을 협약서로 간주한다.

제4조(강사수당)

- ① 강사수당은 시간당 40,000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강의시간은 동장이 발간하는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의 내용에 따른다.
- ③ 강사수당은 산정되는 금액에서 법규에 정해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프로그램 운영)

수강생 모집결과 월 강사수당 지출대비 월 수강료 수입 기준 미 충족 프로그램 또는 동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폐강하거나 시간·요일 등을 변경할 때에는 강사는 동장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 동장이 개설하는 프로그램의 한 과정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단, 신설 및 특강 프로그램인 경우 특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강사는 동장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교육적 차원의 공익사업임을 인식하여 성실하게 출강하고 최선을 다해 강의하여야 한다.
3. 강사는 강의시간 중에 안전사고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제공 등)

강사는 담당한 강의에서 사용할 교육용품을 유료로 수강생에게 대여, 판매, 제공(이하 “제공 등”이라 한다.)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동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공 등에 있어 이를 강요하거나 동장과 협의없이 부대비용을 수강생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자료제출)

강사는 협약 후 신상과 프로그램 계획 등 프로그램의 진행에 필요한 과정별 강의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기간)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며 단,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임된 강사의 협약기간은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협약취소)

동장은 강사와의 협약기간의 만료가 도래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기타 사유로 2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로 폐강되는 경우
3. 기타 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제10조(조정)

본 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에 따라 동장, 강사 간에 협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협약서)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및 날인하여 동장과 강사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장생포동장 (인)

강 사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